

2004년 8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4. 7. 배포
- ☐ 사진 있음
- ☐ 총 9 쪽
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대기보전국 | 박일호 과 장 | 전화   | 02-2110-6818   |
| 생활공해과 | 조현수 사무관 | (메일) | chohs@me.go.kr |

## 2. 「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◇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법적근거 마련
- ◇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
- ◇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삭제

☐ 정부는 '웰빙(Well-Being)'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'새집증후군' 등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그간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신축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」 개정안을 8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.

☐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,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조항의 삭제 등도 포함되었다.

☐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동법 제9조에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·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※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(유지기준, 권고기준)은 이미 설정

○ 동법 제11조에서는 현재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제한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의 “새집증후군” 문제해결을 위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다.

○ 동법 부칙에 기존 다중이용시설도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권고를 수용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.

※ 기존 시설의 경우 환기설비 설치의무 규정이 삭제되지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시 개선명령으로 환기설비 개선 또는 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에 의해 제재(동법 제10조)

○ 한편 지하도상가중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모든 지하상점가를 적용대상 시설로 하기 위해 ‘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’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.

□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.

#### 〈참고자료〉

- 붙임 : 1.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
2.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

##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

### □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법적근거 마련

- 내년중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령에 규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
  - 법 제9조에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시공자에게 측정·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판단기준이 없어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건설업체간의 과잉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 제기
- ⇒ 법 제9조에 “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”는 제3항을 신설하여 근거 마련

### □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을 공동주택에도 확대

- 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“새집증후군” 등 공동주택 실내공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욱 긴급
- ⇒ 법 제11조 제2항에서 “다중이용시설”을 “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”으로 개정

### □ 기존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규정 삭제

-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기존 시설도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소급적용의 문제발생
- ※ 정부원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시 동 경과조치 규정 삽입

○ 만일 동 조항대로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는 기존 건물도 환기설비 설치를 강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에 대한 비용부담문제 (건축비의 1~5%) 발생

- 특히 기존 다중이용시설이 임대차일 경우, 환기설비 교체공사 등의 불편을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등이 우려

- 만약 기존 건물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환기설비를 개선 또는 대체하여야 하므로(개선명령), 환기설비 설치강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심사시 삭제 합의

⇒ 기존 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의무 소급적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하위법령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2항 단서 삭제

#### □ 지하도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제외규정 삭제

○ 법 개정시('03.5.29)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의 실내공기질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이용시설(공중위생관리법)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

○ 시행령에 대한 부처협의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('04.2.9)함에 따라 제외규정 삭제

⇒ 모든 지하상점가를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서 “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)”는 규정 삭제

<붙임 2>

#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

2004. 7

환 경 부

## 1. 개정이유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(2003. 5. 29, 법률 제6911호) 하위법령 규제심사(2004. 4. 2)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환기설비 설치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,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의 법적근거 마련 등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제2호).
- 나. 법 제9조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).
- 다. 법 제11조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함(안 제11조제2항).
- 라.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부칙 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

## 법률 제 호

###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2. 지하도상가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중 “다중이용시설”을 “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적용대상)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.<br>1. (생략)<br>2. <u>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)</u><br>3. ~ 11. (생략)<br>② (생략)              | 제3조(적용대상) ①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<u>지하도상가</u><br>3. ~ 11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·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<u>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 ① (생략)<br>② <u>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</u>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br><br>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 | 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<u>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 |

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-----

-----

-----

-----

<단서삭제>